

강성호 선임연구위원, 이소양 연구원

## 요약

- 퇴직연금 연금화 한계의 주요 원인은 적립자산의 누수·수령형태의 자율성 등에 있으며, 이로 인해 퇴직연금에 대한 재구조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 주요국의 퇴직연금 연금화 유인 정책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퇴직연금에 시사점을 모색함
- 우리나라 퇴직연금 제도는 중도인출 및 해지에 대한 약한 규제와 수령형태의 자율성 등으로 인해 적립금이 누수되는 경향이 있으나 연금형태의 수령을 유도할 정책적 수단이 미흡함
  - 현행 퇴직연금은 퇴직소득세만 납부하면 자유로이 수령할 수 있어 퇴직연금 수급연령인 55세에 도달하기 전에 대부분의 적립금이 누수되는 경향이 있음
  - 퇴직연금 수령시점에서는 연금과 일시금을 선택적으로 수령할 수 있고, 퇴직자산에 적용되는 높은 퇴직소득 공제율은 퇴직소득세 부담을 낮추어 일시금 수령 유인을 높임
- 주요 선진국들은 퇴직연금의 일시금 수령 및 조기인출 시 종과세 혹은 패널티 부과, 연금수령의 (준)강제화, 다양한 연금지급 방식을 통한 유동성 문제 보완을 통해 퇴직연금 연금화를 추진함
  - 미국, 영국 등은 퇴직연금의 일시금 수령 및 조기인출 시 종과세 혹은 패널티 부과, 종합소득과세 적용과 이에 따른 일시금의 세부담 증가를 통해 연금화를 유도함
  - 네덜란드, 스위스 등은 연금형태의 수령을 강제적 혹은 원칙적으로 수령하도록 퇴직연금 제도를 설계함으로써 연금화를 강제화하고 있음
  - 영국, 스위스 등은 연금지급 방식 및 연금상품의 다양성을 통해 노후 긴급자금의 유동성 부족 문제를 완화하는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강화 정책을 추진함
- 퇴직연금의 연금화 정책을 통한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이 요구됨
  - 퇴직연금이 원칙적으로 중도인출, 이직 후 해지되지 못하도록 세제개편, 연금수령 강제화 등이 요구됨
  - 퇴직연금 수급 시 자동으로 연금형태로 수령되도록 '자동연금수령제도'(가칭)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연금화 강화에 따른 유동성 부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연금지급 방식 다양화와 투자상품에 연금상품의 편입 등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연금화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 수급단계뿐만 아니라 가입·유지단계에서 충실한 적립금 관리가 필요함



## 1. 서론

- 최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는 공적연금 개혁을 논의 중이며, 이와 관련하여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을 보완하기 위해 퇴직연금의 연금화 강화를 주요한 의제 중의 하나로 다루고 있음
  - 국회 연금특위의 주요 의제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역할분담 등 공적연금 개혁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확대의 한계로 퇴직연금의 연금화 강화가 요구되고 있음
  - 특히, 2020년 55세 이상 퇴직연금 수급대상자의 4.3%만 퇴직연금을 연금형태로 수령하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적립금 규모가 255조 원에 달하는 퇴직연금의 잠재된 노후소득보장 기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 퇴직연금 연금화 한계의 주요 원인은 적립자산의 누수·수령형태의 자율성 등에 있으며, 이로 인해 퇴직연금에 대한 재구조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 우리나라 퇴직연금은 중도인출(적립금의 1%, 2020년)과 이직 과정에서 높은 해지(적립금의 4.3%, 2020년)로 인해 퇴직연금 자산이 누수되고, 수령 시 대부분 일시금을 선택함으로써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취약함
  - 이에 퇴직연금의 보험료 일부를 별도 계정에 의무적으로 납부하여 운용하거나, 퇴직연금 공단을 신설하여 퇴직연금을 준공적 연금으로 운영하자는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본고는 주요국의 퇴직연금 연금화 유인 정책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퇴직연금에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함
  - 이를 위해 먼저, 우리나라 퇴직연금의 연금화 현황을 살펴보고 연금화가 미흡한 원인을 검토함
  - 다음으로 퇴직연금 연금화를 제도적으로 (준)강제화 하거나(네덜란드, 스위스 등), 세제유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연금수령을 유도하는 국가(미국, 영국 등)들을 대상으로 이들 제도의 특징을 살펴본 후 시사점을 모색함



## 2. 우리나라 퇴직연금 연금화의 현황과 평가

- 우리나라 퇴직연금은 중도인출, 이직 시 해지 등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적립금 누수가 발생하고 있음
  -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주로 주택구입(46.3%), 주거임차(16.3%) 등 주거 관련 비용으로 인출<sup>1)2)</sup>되는 경향이 있으며, 그 규모는 2조 6천억 원으로 2020년 한 해 동안 전체 적립액(255조 원)의 1%가 누수됨

1) 통계청 보도자료(2021), “2020년 퇴직연금통계 결과”

2) 주요 선진국은 경제적 곤란 등 긴급자금수요 발생에 국한하여 중도인출을 허용함

〈표 1〉 퇴직연금 인출사유별 중도인출 현황(2020년)

(단위: 명, 억 원, %)

구분	합계(구성비)	주택구입	주거임차	장기요양	파산선고	회생절차	기타
중도인출 인원	69,139 (100.0%)	29,231 (42.3%)	15,966 (23.1%)	16,403 (23.7%)	202 (0.3%)	6,908 (10.0%)	429 (0.6%)
중도인출 금액	26,192 (100.0%)	12,122 (46.3%)	4,270 (16.3%)	8,573 (32.7%)	25 (0.1%)	872 (3.3%)	332 (1.3%)

주: 괄호 안의 수치는 중도인출 인원과 금액의 인출사유별 구성비를 나타냄  
 자료: 통계청 보도자료(2021. 12. 23), “2020년 퇴직연금통계 결과”, p. 45

- 아직 시 퇴직 적립금 해지금액은 2020년 11조 원으로, 한해 누수 금액이 전체 적립액(255조 원)의 4.3%에 달함
  - IRP 해지 현황을 보면 2020년 한 해 동안 85만 8천 명의 계좌이전이 있었고, 그 중 84만 3천 명이 해지하여 98.2%의 해지율을 보임(금액 기준 해지율 72.9%)

〈표 2〉 개인형 퇴직연금 이전 및 해지 현황(2020년)

(단위: 명, 억 원, %)

구분	IRP 이전		IRP 해지	
	이전 인원	이전 금액	해지 인원	해지 금액
2020년	858,203	151,670	842,821 (98.2)	110,521 (72.9)

주: 괄호 안의 수치는 이전 인원(혹은 금액) 대비 해지 인원(혹은 금액)인 해지율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보도자료(2021. 12. 23), “2020년 퇴직연금통계 결과”, p. 21

○ 우리나라는 55세 이상 퇴직급여 대상자의 대부분이 일시금을 수령하고 있음

- 55세 이상 퇴직급여 대상자의 연금 수령 비율(계좌 기준)이 1.9%(‘17년), 2.1%(‘18년), 3.3%(‘20년), 4.3%(‘21년)로 점진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지만, 2021년 일시금 선택 비율은 95.7%로 절대적으로 높음
- 일시금과 연금 수령자의 평균 적립금을 보면 각각 1천 6백만 원, 1억 8천 9백만 원이라는 점에서 적립금이 적으면 연금수령의 유인이 떨어져 일시금을 수령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남

〈표 3〉 유형별 퇴직급여 수령 현황 (2021년 기준)

(단위 : 좌, 억 원, %)

구분	연금 수령		일시금 수령		합계	
	인원	비 중	인원	비 중	인원	비 중
계좌 수(A)	16,984	4.3	380,286	95.7	397,270	100.0
금액(B)	32,028	34.3	61,398	65.7	93,426	100.0
계좌당 금액(B/A)	1.89	-	0.16	-	0.24	-

자료: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1. 4. 5), “2020년도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 통계”

- 우리나라 퇴직연금 제도는 중도인출 및 해지에 대한 약한 규제와 수령형태의 자율성 등으로 인해 적립금이 누수되는 경향이 있고 수급 시 연금과 일시금의 선택이 가능하여 연금형태의 수령을 유도할 정책적 수단이 미흡함
  - 특히 이직 과정에서 퇴직소득세만 납부하면 퇴직연금 계좌의 해지에 특별한 규제가 없어 퇴직연금 수급연령인 55세에 도달하기 전에 대부분 자산이 누수됨
    - 특히 우리나라 평균 근속기간은 6.7년(2019년)<sup>3)</sup>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생애근로기간 동안 4~5회의 이직 과정에서 상당한 퇴직연금 적립금이 누수될 것으로 예상됨
  - 퇴직연금 수령시점에서는 연금과 일시금을 선택적으로 수령할 수 있고, 퇴직자산에 적용되는 높은 퇴직소득 공제율은 퇴직소득세 부담을 낮추어 일시금 수령 유인이 높음
    - 현행 퇴직급여의 퇴직소득공제율은 50.3% 수준이고, 이를 반영한 퇴직일시금의 실효퇴직소득세율<sup>4)</sup>은 4.4% 수준이어서 일시금 수령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음<sup>5)</sup>



### 3. 주요국 퇴직연금의 연금화 정책과 성과

- 미국, 영국 등은 일시금 수령 및 조기인출 시 종과세 혹은 패널티를 부과함으로써 연금수령을 유인하고 있음
  - 미국은 일시금 수령에 대한 비중에 제한이 없고 59.5세 이전에 조기인출할 수 있지만, 조기인출 시 10%의 패널티가 적용되고 정상 인출 시에도 누진소득세<sup>6)</sup>를 적용함으로써 일시금 수령 시 종과세가 되는 구조임
    - 미국 등 주요국의 퇴직연금 소득은 우리나라와 같이 분리과세<sup>7)</sup> 되는 것이 아니라 종합소득으로 과세되므로 구조적으로 일시금 인출에 대한 세부담이 큼
  - <그림 1>, <그림 2>의 미국의 DC형 퇴직연금의 일시금수령 비중을 보면 퇴직연령에 가까울수록, 적립금(계좌보유잔액) 비중이 높을수록 일시금 수령 비중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줌<sup>8)</sup>
    - 이를 통해 볼 때 오랜 적립기간을 통해 축적된 적립금이 많은 중·고령층의 경우 일시금이 아니라 연금형태로 수령하게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3)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기준으로 산출함(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상용 5인 이상 부분)」)

4) 과세표준소득이 아닌 퇴직급여액에 대한 퇴직소득세 비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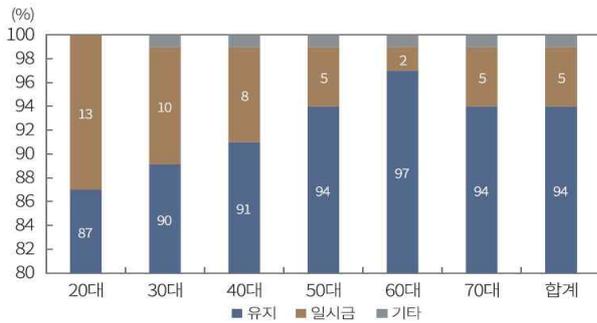
5) 강성호·류건식(2017), 「퇴직소득세 개선과 연금화 방안」, 「고령화리뷰」, 보험연구원

6) 미국 국세청(IRS)은 매년 적용되는 세율을 발표하고 있으며, 퇴직연금(401(k)) 및 개인퇴직계좌(전통형 IRA)에서 인출된 소득은 종합소득과 세대상이 됨. 미국의 2022년 소득세율(Income tax brackets)은 소득구간별로 구분되어 10%, 12%, 22%, 24%, 32%, 35%, 37%의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있음. 해당 소득구간은 가구유형에 따라 다른데, 가구유형은 싱글(Single), 부부합산(Married Filing Jointly; MFJ), 부부개별(Married Filing Separately; MFS), 세대주(Head of Household; HoH), 미망인(Qualifying Widow; QW)로 구분됨 (<https://www.creditkarma.com/tax/i/what-is-taxable-income#what-is-taxable-income>)

7) 우리나라의 소득세를 부과하는 소득기준은 크게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되며,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종합소득과 분리하여 과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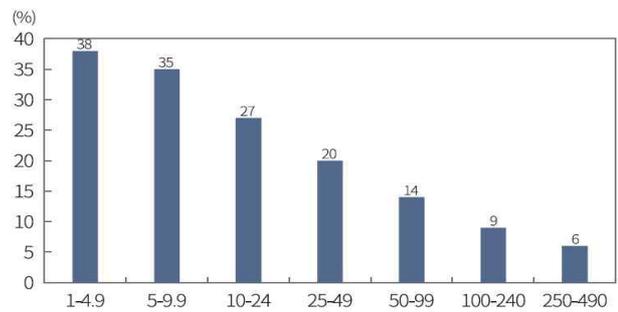
8) 송홍선(2022), 「DC형 퇴직연금의 노후안정망 역할 강화 연구」, 연구보고서, 자본시장연구원

〈그림 1〉 미국 DC형 퇴직연금 적립금의 일시금 수령 비중



주: 연령층별 연금자산 잔액 기준 분배임  
 자료: Vanguard(2020), 송홍선(2022)을 재인용함

〈그림 2〉 미국 DC형 퇴직연금의 보유잔액별 일시금 수령 비중



주: X축은 퇴직연금 개인계좌 보유잔액 구간이며, 단위는 천 달러임  
 자료: Vanguard(2020), 송홍선(2022)을 재인용함

- 영국은 2015년 이전에 강제 연금화 국가였으나 의무연금화 제도를 폐지(Pension freedom)하고, 미국과 유사하게 퇴직일시금에 누진소득세를 적용하는 형태로 일시금 수령 시 종과세가 되는 구조임
  - 영국 금융감독청(FCA)<sup>9)</sup>에 따르면 계좌 수 기준으로 의무연금화 제도 폐지 이후인 '16년 4월~9월에 일시금 수령 비중이 56%로 증가하였으나, 이후 큰 변화 없는 것으로 나타남('20년 10월~'21년 3월 54.9%)
  - 한편, 영국의 의무연금화제도 폐지 후에도 금액 기준 일시금 인출 비율은 10.9%여서 의무연금화 폐지로 적립금이 적은 수급자를 중심으로 일시금 수령이 증가한 면은 있으나 누진세제 효과로 전체 일시금 수령은 억제됨
  - 퇴직연금 적립금의 25% 이상에 대해 누진적 종합소득세율<sup>10)</sup>로 과세됨으로써 일시금 수령을 억제하고, 55세 이전에 수령하는 경우 55%의 소득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조기수령을 억제함<sup>11)12)</sup>

〈표 4〉 영국 퇴직연금 적립금의 수령 형태

구분		'18년 10월~'19년 3월	'19년. 4월~9월	'19년 10월~'20년 3월	'20년 4월~9월	'20년 10월~'21년 3월
연금 수령	계좌	36(11.4)	38(10.8)	31(9.8)	29(9.9)	32(10.3)
	금액	22(11.2)	23(11.0)	18(9.8)	19(11.7)	22(10.4)
정기인출	계좌	98(31.0)	102(28.5)	95(30.1)	75(25.8)	91(29.7)
	금액	136(70.0)	147(69.9)	135(71.6)	114(68.9)	145(69.6)
수시인출	계좌	13(4.2)	15(4.3)	16(5.1)	13(4.5)	15(5.0)
	금액	14(7.2)	15(7.3)	14(7.4)	11(6.9)	19(9.1)
일시금인출	계좌	169(53.4)	201(56.4)	174(55.0)	173(59.8)	168(54.9)
	금액	22(11.5)	25(11.8)	21(11.1)	21(12.5)	23(10.9)
합계	계좌	316(100.0)	356(100.0)	316(100.0)	290(100.0)	306(100.0)
	금액	194(100.0)	210(100.0)	188(100.0)	165(100.0)	209(100.0)

주: 괄호 안의 수치는 수령 계좌와 금액 기준 비중을 의미함  
 자료: 영국 금융감독청(FCA), "Retirement income market data 2020/21"(https://www.fca.org.uk/data/retirement-income-market-data-2020-21)

9) FCA, "Retirement income market data 2020/21"(https://www.fca.org.uk/data/retirement-income-market-data-2020-21)  
 10) 영국은 연금소득을 포함한 과세 대상 소득(1만 2,570파운드 이상)은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며 2022년 4월~2023년 4월 동안 20~45%의 세율로 비율로 과세됨(https://www.gov.uk/income-tax-rates)  
 11) Money Farm, "Can I withdraw my pension before turning 55?"(https://blog.moneyfarm.com/en/pensions/can-i-withdraw-my-pension-before-55)  
 12) Money Advisor, "When Can I Take My Personal Pension?"(https://www.onlinemoneyadvisor.co.uk/pensions/personal-pensions/personal-pension-withdrawa)

- 스위스도 퇴직연금 소득에 대해 누진소득세를 적용하는 형태여서 일시금 수령 시 높은 과세부담을 지게 됨.<sup>13)</sup>
  - 특정 사유에 한해 적립금의 중간인출을 허용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주택 구매, 개인사업자가 되는 경우, 스위스에서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경우로 한정됨

○ 네덜란드, 스위스 등은 연금형태의 수령을 강제적 혹은 원칙적으로 수령하도록 퇴직연금 제도를 설계함<sup>14)15)</sup>

- 네덜란드는 의무연금화 제도를 통해 수급자의 100%가 퇴직연금을 연금형태로 수령함
  - 네덜란드의 퇴직연금 가입자는 68세부터 퇴직급여를 연금형태로 수령할 수 있으며, 68세 이전에 수급하게 될 경우 조기수령 1년 마다 7%씩 퇴직연금의 급여액이 감소됨
- 스위스는 퇴직연금 수급 시 원칙적으로 연금형태의 수령을 하도록 하는 준강제형 연금화 제도를 운영함
  - 스위스 퇴직연금의 연금수령액 수준은 적립금 규모와 연금 최소전환율<sup>16)</sup>(2022년 6.8%)에 따라 결정되는데, 적립금이 20만 스위스프랑인 수급자는 연간 1만 3,600스위스프랑(월 1,133스위스프랑)<sup>17)</sup>을 수령하게 됨
  - 한편 일시금 수령을 원할 경우 은퇴시점 3년 전에 그 의사를 밝힘으로써 일시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sup>18)</sup> 현재 스위스 퇴직연금의 연금 수령 비중은 70%를 상회하는 수준임

〈표 5〉 스위스 퇴직연금의 연금 수령 및 일시금 수령 비중

(단위: 백만 스위스프랑,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연금 수령	금액	28,781	29,502	30,164	30,801	31,515
	비중	79.0	78.2	77.1	75.6	74.2
일시금 수령	금액	7,664	8,228	8,981	9,915	10,949
	비중	21.0	21.8	22.9	24.4	25.8
합계	금액	36,445	37,730	39,145	40,716	42,464
	비중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스위스연방사회보험청(FSIO)(<https://www.bsv.admin.ch/bsv/en/home/social-insurance/bv/statistik.html#accordion1669082241705>)

○ 연금지급 방식 및 연금상품의 다양성 등을 통해 노후 긴급자금의 유동성 부족 문제를 완화하는 퇴직연금의 노후 소득보장 강화 정책을 추진함

- 영국 퇴직연금 지급방식은 연금 수령, 정기인출(Drawdown),<sup>19)</sup> 수시인출(UFPLS),<sup>20)</sup> 일시금 형태로 다양하게 운

13) 스위스에 근로자가 퇴직연금의 적립금을 일시금으로 수령 시 적용되는 한계세율은 29.2%(스위스 남부지역에 있는 도시인 벨린초나 기준)임 (<https://finpension.ch/en/capital-withdrawal-tax-compared/>)

14) Lexology, "Q&A: occupational pension schemes in Netherlands"(<https://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db50b81a-b62a-40f8-ad3f-b9e28f5f2462>)

15) 각국의 사적연금 연금화 관련 내용은 Oxera(2014), "The Retirement Income Market", p. 2, p. 19, p. 56; OECD(2015), "Stocktaking of the Tax Treatment of Funded Private Pension Plans in OECD and EU Countries", p. 14을 참조함

16) 스위스 정부가 은퇴자의 기대여명과 시장금리 활용하여 산출하며, 적립금에서 연금으로 인출할 수 있는 연간 최소 전환비율을 의미함

17) 적립금(20만 프랑)×연금전환율(6.8%)=연간 1만 3,600스위스프랑(월 1,133스위스프랑)

18) 일본의 퇴직연금도 연금형태로 지급하다가 일시금 수령의사를 밝히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일시금 지급 숙려제도를 두고 있음

19) 정기인출은 매달 또는 매년 일정 금액을 인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적립금의 25%는 비과세로 인출이 가능하고 나머지 적립금은 주식, 채권 등 자산에 투자되어 운용됨

영되며, 이는 긴급자금의 유동성 부족 문제를 완화함으로써 연금자유화 이후에도 일시금에 편중되지 않음

- 영국 퇴직연금 적립금의 수령 형태별 인출 비중을 금액 기준으로 살펴보면, 2020년 10월~2021년 3월 동안 정기인출은 69.6%, 일시금은 10.9%, 연금 수령은 10.4%, 수시인출은 9.1% 순으로 나타남
- 미국은 2022년 퇴직연금(401(k))의 디폴트옵션 상품에 연금상품을 편입하도록 하는 법안이 하원에 제기되어 있으며, 이러한 조치는 운용단계에서도 은퇴 후 소득불안정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정책으로 볼 수 있음<sup>21)</sup>
  - 동 법안에 따르면 퇴직연금 기여금의 50%까지 연금상품을 직접 구입할 수 있도록 함
- 스위스는 퇴직연금에 대한 다양한 수령방식과 최저수익률 보장을 통해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제고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sup>22)</sup>
  - 스위스 퇴직연금의 지급방식은 일시금 수령, 연금 수령, 혼합형(부분 일시금과 부분 연금을 포함) 등 다양하며, 이러한 다양한 지급방식은 긴급자금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켜 노후자산의 유동성 문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보임
  - 스위스 퇴직연금의 최저수익률은 2011년 2.0%에서 2017년 1%로 하락하였고 2023년까지 1%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며, 수급자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제고하는 것으로 평가됨<sup>23)</sup>
- 네덜란드는 퇴직연금 수령 시 연금형태로만 수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유동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전후후박형(High-low Income Streams) 연금 지급을 가능하도록 함<sup>24)</sup>
  - 전후후박형 연금은 공적연금수령 개시 전에 은퇴할 경우 공적연금수령 개시 시점(68세)까지 연금액을 많이 수령하고 이후 적게 수령할 수 있으며, 공적연금 개시 이후에 퇴직연금을 수급하게 될 경우에도 최초 5년에서 10년까지는 연금액을 많이 수령하고 이후에 적게 수령할 수 있도록 함



## 4. 결론

- 퇴직연금 적립금이 연금 수령시점까지 지속적으로 축적될 수 있도록 이직 후 해지를 원칙적으로 할 수 없도록 세제개편, 연금수령 강제화 등이 요구됨
  - 연금 수령시점인 55세까지는 이직하더라도 퇴직연금 계좌를 원칙적으로 해지하지 못하도록 제도화하되, 긴급자금 필요로 인한 유동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퇴직연금 대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퇴직연금의 연금화 유인을 위해 일시금 수급 시 적용되는 퇴직소득공제 축소를 통해 일시금 수령에 대한 부담을 강

20) 수시인출은 한 번에 적립금의 25%를 인출이 불가능하나, 인출 시마다 인출금액의 25%는 비과세로 인출이 가능한 방식으로 2015년 연금 개혁 과정에서 새롭게 도입됨

21) CNBC, "Annuities could soon qualify as a default investment in 401(k) plans"(<https://www.cnbc.com/2022/03/09/annuities-could-soon-qualify-as-a-default-investment-in-401k-plans.html>)

22) Federal Social Insurance Office, "Meaning and objectives of occupational pension funds"(<https://www.bsv.admin.ch/bsv/en/home/social-insurance/bv/grundlagen-und-gesetze/grundlagen/sinn-und-zweck.html>)

23) 2021년 기준 스위스 퇴직연금의 평균 투자수익률은 8.06%로 높아 최저수익률 보장에 대한 부담은 없는 것으로 평가됨(<https://www.ubs.com/ch/en/private/pension/information/magazine/2022/understand-the-pension-fund.html>)

24) 김세중·김유미(2017), 『사적연금의 장기연금수령 유도방안』, 연구보고서, 보험연구원

화하고, 일시금 수령 및 조기인출 시 중과세 혹은 패널티를 부과를 통해 연금형태의 수령을 유인할 필요가 있음

- 퇴직연금 수급 개시연령에서 특별한 의사표현이 없을 시 원칙적으로 연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자동연금수령제도 (가칭)’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네덜란드, 스위스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연금 수령 형태를 강제화 혹은 원칙화(Opt-out)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스위스의 경우 일시금 수령을 위해 은퇴시점 3년 전에 의사를 밝히게 함으로써 연금화를 유도하거나, 이와 유사한 일본의 일시금 지급 속려 제도도 눈여겨 볼 만함
  
- 연금화 강화에 따른 유동성 부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연금지급 방식의 다양화뿐만 아니라 투자상품에 연금상품의 편입 등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영국의 퇴직연금 지급방식과 같이 연금 수령, 정기인출(Drawdown), 수시인출(UFPLS), 일시금 지급 등 연금소비자의 재무적 니즈를 반영하는 다양한 인출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미국, 스위스의 사례에서 보듯이 디폴트옵션 상품에 연금상품을 편입하거나, 퇴직연금 투자 상품에 대한 최저수익률 보장을 통해 퇴직연금에 대한 노후소득보장 기능 제고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무엇보다 퇴직연금 연금화 정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 수급단계뿐만 아니라 가입, 유지단계에서 지속적으로 적립금이 관리되고 실업수당, 노동시장의 유연성 등 관련 제도 및 노동환경에 대한 종합적 고려가 요구됨
  - 선진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수급단계에서 누진세제 적용을 통한 일시금 수령을 억제하고 제도적으로 연금화를 강제하는 정책이 추진됨
  - 동시에 가입·유지단계에서 자동가입, 적립금 누수 방지 등을 통해 적립금이 누수되지 않도록 전 단계에서 관리되어야 할 것임
  - 또한 실업수당, 노동시장의 유연성 등 퇴직 후 생활안정이 수반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노동환경에 대한 유기적 연계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퇴직연금의 연금화 정책이 실효성을 얻게 될 것임